

##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2014년 상반기)

### 1. 어선설비기준 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8호, 2014. 01. 01

- 조업중 해상추락에 따른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기준 신설(제26조)
- GPS(위성항법장치) 설치대상을 VHF-DSC(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제185조)
  - 어선사고시 조난위치를 수색·구조기관에 보내기 위하여는 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가 설치되어 VHF-DSC와 연동되어야 함
  - 어선설비기준 시행일(2014. 01. 31)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부터 적용

### 2.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9호, 2014. 01. 01

- 수밀격벽 설치대상을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까지 확대(제12조)
  - (기존)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에 적용
- 선외기 설치어선에만 인정하던 폴리에틸렌계

재료의 연료유탱크를 선내외기 설치어선까지 확대(제24조)

- 동력빌지펌프 설치 완화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력빌지펌프 대체 용품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두레박 비치 요건 삭제(제31조)
- 어선화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설비요건 강화(제61조)
  - 어선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낚시어선 등에 어린이 승선에 따른 최대승선 인원 계산방법을 정함(제64조)
  -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가 어선에 승선할 경우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
- GPS(위성항법장치) 설치대상을 VHF-DSC(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제69조)
  - 어선사고시 조난위치를 수색·구조기관에 보내기 위하여는 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가 설치되어 VHF-DSC와 연동되어야 함
  - 어선설비기준 시행일(2014. 01. 31)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
- 무선설비 설치 면제 대상 중 '내수면어선'을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까지 확대(제72조)
- 항해용구(레이다반사기, 라디오, 위성항법장치) 설치 면제어선 확대(별표 4)

- 레이더반사기 면제 대상을 주간항행 소형 어선에서 내수면 소형어선까지 확대
  - 레이더반사기는 소형어선에 설치되어 상대방 어선(35m이상)의 레이더 화면에 크게 표시 되도록 해주는 장치임
  - 내수면에서 항행하는 소형어선의 경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 불필요
- 무선설비 설치 어선에는 라디오 설치 면제
  - 라디오 설치목적은 기상정보 등을 수신 하기 위함이나, 무선설비 설치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방송에서 기상정보 등을 수신하고 있음
- 기적·호종을 대신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
  - 징 또는 팽과리는 고가이면서 시중구입이 어려움에 따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VHF-DSC(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대상 확대(부칙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06호, 2009. 12. 14) 제4조)
  - 2009. 12. 14 개정(고시 제2009-406호) 경과조치에 따라 VHF-DSC 설치를 유예 했던 2005. 10. 25 이전 건조어선에 대하여도 설치 의무화
  -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치확인을 위해 설치 필요

### 3.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0호, 2014. 01. 01

- 조업 중 해상추락에 따른 어업인의 인명피해

- 예방을 위해 연근해어선에서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형식승인 시험기준 신설(별표 1 74-2, 74-3, 74-4)
  - 고체식, 팽창식 구명조끼 외에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형식승인 시험기준 마련
- 착용성이 향상성 구명조끼 검정기준 마련 (별표 3)
  - 고체식, 팽창식 구명조끼 외에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검정기준 마련

## 4.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 ▣ 해양수산부령 제65호, 2014. 01. 08

-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 점검 범위 규정 신설(제9조제2항)
  -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장 등에게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매 월 1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 및 기록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서류의 비치 의무 규정 신설(제13조제2항)
  -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완화 (제42조)
  - 유조선·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승무원 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범위를 '항해사'에서 '1등항해사'로 완화
  - 부원의 승무자격 유효기간에 대한 자격요건을 면제
  -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유지 또는 되살리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 신설

- 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리자 업무 강화(제52조)
  - 전염병 등 위급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르도록 규정
- 항해 중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만료 시 적용 규정 명확화(제54조)
  -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 인정'
- 인증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이 항해 가능한 경우를 규정(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 선원의 송환 권리, 2006 해사노동협약 서류 비치, 선박소유자의 의무 등을 인증검사 항목에 포함
  -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 실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이 제한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운전 또는 천재지변)
-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자격요건 확립 및 신분증 관리 규정 신설(제58조의 6)
  - 인증검사관은 '연 1회 이상'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 수료
  -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지를 알리도록 규정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제58조의 8)
  -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하는 요건 삭제

## 5. 선박법 개정

■ 법률 제12537호, 2014. 03. 24 [시행 2014. 09. 25]

-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선박 확대(제5조)
  -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
-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기관을 확대(제9조)
  -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기존) 취득지 또는 최초 도착지의 대한민국 영사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취득지 또는 최초 기항지의 대한민국 영사
- 선박 시운전시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국기를 게양·항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0조)

##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5274호, 2014. 03. 24

- 용어변경(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제22조)
  - 동력요트 →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시 탑승시험관 인원 변경(제6조)
  - 1명 → 2명
- 조종면허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제10조제1항 및 별표 5)
  -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 행정처분내용에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추가
-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사항 개선(제24조 제1항제2호)
  - 주소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의무 삭제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기준 강화(별표 3 제1호)
  - 책임운영자 1명을 두고, 해당 교육과정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의 근무경력 기준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면제 대상자 확대(별표 4)
  - 체육 관련 단체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에 대해 기존의 2급 일반조종면허의 실기 시험 면제에서 분야에 맞게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함

## 7. 선원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5310호, 2014. 04. 15

- 선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조)
  - 「2006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중,
    - 선박검사원, 선박수리를 위하여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도선사, 항만노동자, 실습 선원, 선박에서의 공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을 선원의 범위에서 제외
-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3조의6 신설)
  -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나,
    -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장의 휴식시간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1항)
  -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송환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선박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기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개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임금채권 보장보험 등의 범위 확대(제18조의3제1항 제1호 신설)
  -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의 범위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을 추가함
- 예선의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 규제 폐지(제21조제1항 단서)
  -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접안 등을 위하여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선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항해당직 부원을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서 예선을 제외함으로써 예선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 규제를 개선함
-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의무적으로 선박에 승무하게 함에 따라,
  -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 교육을 받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 선박조리사를 승무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의 범위를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및 어선 등으로 정함
-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 마련(제49조의2 신설)
  - 선원이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내용을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선내 불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 외국에서 대한민국 영사의 직무 범위 및 절차 명시(제49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 외국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영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수행절차 등을 명시하여 외국에서 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내용 및 절차

-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항구에 기항하는 등 우리나라의 감독권이 미치는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및 상세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 해양수산부령 제79호, 2014.4.17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신종기구 추가 (제1조의2)
  - 신종 수상레저기구 중 기종 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보트’ 등 추가
- 수상레저기구 안전장비 보완 (제14조제1항)
  - 워터슬래드로 수상레저활동시 래프팅과 같이 보호헬멧을 착용해야 함
- 안전검사 신청시 복원성 자료 제출 대상 축소 (제26조제1항제1의3호)
  - (기존) 13인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개정) 13인 이상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종류 확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6조의2제2항제1호)
  - (기존) EPRIB, VHF/DSC 인정
  - (개정) EPRIB 또는 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의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VHF/DSC 그 밖의 주파수통신장치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 중 기본시설에 대한 기준 개정
  - (기존) 상담실 면적 30m<sup>2</sup> 이상, 문서고 면적 9m<sup>2</sup> 이상
  - (개정) 상담실과 문서고 면적의 합 15m<sup>2</sup> 이상

## 9.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49호, 2014. 05. 01 [시행 2015. 05. 01]

-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건설기계 설치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선박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함 (제3조)

## 10.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4호, 2014. 05. 20

- SOLAS 개정에 따라, 화물선의 격벽 중 로로 구역과 인접한 구역의 방화기준을 상향(별표 3, 별표 4)
  - \* 결의서 MSC.338(91)에 따른 SOLAS 개정사항 수용
  - (기존) 강 또는 이와 동등한 구획
  - (개정) A0 및 A30
- SOLAS 개정에 따라, 문턱 없이 승인된 방화문 설치시 문 아래의 간격에 대한 최소요건 신설(제12조, 제13조)
  - 결의서 MSC.269(85)에 따른 SOLAS 개정 사항 수용

## 11. 선박만재흡수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3호, 2014. 05. 20

- 협약(ICLL)개정에 따라, 건현 지정시 손상 복원성 확인을 위하여 선박의 손상상태를 가정하는 방법 개정(제2조제33호사목)
  - 소비품의 적재상태 가정방법과 평형수 탱크 적재상태를 명확히 함
  - 「선박만재흡수기준」의 손상상태 가정 시 손상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선박의 구획 내 액체의 자유표면효과를 고려하는 방법 개정
  - 선박내의 액체로 인한 모든 가능한 자유표면 효과의 영향을 고려하게 함으로서 모든 실제 화물적재상태의 손상복원성을 증명하게 함

## 12. 선박설비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7호, 2014. 05. 29

- 선박설비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기술표준은 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화된 기술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
-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선속거리계는 각각 독립된 장비에서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표시토록 신설(제106조)
- 선수방위전달장치 요건 중 정적오차 범위 수정 (제108조의4)
  - 협약 요건 수용 시 오기사항 반영(±0.1도 미만 → ±1.0도 미만)

- 항해자료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정보 확대, 최종 기록장치 종류 및 요건 세분화 등 개선된 성능기준 반영(제108조의7)
- 전자해도 등 기록정보 확대 및 기록장치를 고정식, 자유부양식 및 장기저장 기록장치로 구분하고 각 장치의 세부요건을 신설
- 기록된 자료 유지시간 변경, 자체 기기 성능 시험 요건 및 자료가 올바르게 저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 신설
- 2002. 7. 1 전에 건조된 현존선의 선교항해당 직경보장치의 설치시기의 명확화를 위하여 적용유예 및 면제요건 신설(부칙(2011. 6. 14), 제3조)
- '16년 이후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유예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 설치 면제

### 13.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6호, 2014. 05. 29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 LSA CODE 개정사항 수용(Res.MSC.320(89), Res.MSC.321(89))
- 폴(Fall)에 의하여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163.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을 준용(제10조 제34호)
  - 폴로 진수되는 구명정의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시험요건 등 협약 개정사항을 수용
- 팽창식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 중 자동이탈기 시험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정비 기록·관리 요건 개선(별표 14)

- 자동이탈기 시험 시 첫 번째 시험에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폐기토록 명확화(수리하여 재시험 후 사용 불가)
- 현행 정비사실을 별지의 형식으로 기록 중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의 주요정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관리토록 개선

### 14. 강선의 구조기준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0호, 2014. 06. 05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선내소음방지코드(THE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Res.MSC.337(91)) 채택 및 발효예정('14. 7. 1)에 따라 국적선의 국제기준 적용을 위하여 「강선의 구조기준」 제8편을 신설하여 수용하고, 현행 「선체보호도장기준」을 「강선의 구조기준」의 제9편으로 옮김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내 소음을 계측하고, 소음검사보고서를 선내에 비치토록함(제8편, 제945조~제97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선내 소음을 계측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선원이 거주하는 구역의 격벽 등에 대한 차음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선원의 청력 보호를 위해 고(高)소음이 발생하는 구역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